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4월 12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10년 4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0년 4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남상수)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1862호, 2009 .11. 30. 공포·시행)에 따라 공무원이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나타내는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와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을 조성,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무원(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라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 제외)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됨(안 제5조 3항, 신설).
- 나.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5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 3항, 신설).
- 다. 특별휴가 대상과 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및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에 따라 조정 함(안 별표3).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함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할 사안임.
○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나 정치적 의사표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인데 공무원노조 의견 등이 수렴된 것은 있는가?	○ 입법예고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 (이상 총무과장)

4. 토론요지

- 가. 반대토론 : 없음
- 나. 찬성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공무원(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 제외)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5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입양	본인	14
사망	<u>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u>	<u>5</u>
	<u>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u>	<u>3</u>
	<u>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u>	<u>3</u>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u>	<u>3</u>
	<u>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u>	<u>3</u>
탈상	<u>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u>	<u>1</u>

- ※ 비고: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2호
의결년월일	2010. 4. 26 (제160회)

제출년월일 : 2010. 4. 1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1862호, 2009 .11. 30. 공포·시행)에 따라 공무원이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나타내는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와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을 조성,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라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 제외)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됨(안 제5조 3항, 신설).

나.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5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 3항, 신설).

다. 특별휴가 대상과 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및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에 따라 조정 함(안 별표3).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공무원(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 제외)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5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입양	본인	14
사망	<u>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u>	<u>5</u>
	<u>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u>	<u>3</u>
	<u>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u>	<u>3</u>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u>	<u>3</u>
	<u>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u>	<u>3</u>
탈상	<u>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u>	<u>1</u>

- ※ 비고: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p> <p>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 ----- -----.</p> <p>② ----- -----.</p> <p>③ 공무원(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 제외)은 <u>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u> <u>아니 된다.</u></p>
<p>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에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p> <p>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p> <p><u><신 설></u></p>	<p>제13조(복장 등) ① ----- ----- -----.</p> <p>② ----- ----- -----.</p> <p>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5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u>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u>			[별표 3] <u>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u>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결혼	본인	7
	자녀	1			
출산	배우자	3	출산	배우자	3
입양	본인	14	입양	본인	14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 외증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 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p>※ <u>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 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u></p>			<p>※<u>비고: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u></p> <p>2. <u>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u></p>		